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판 결

사 건	2019가단6124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승낙의 소
원 고	1. A
	2. B
	3. C
	4. D
	5. E
	원고들 소송대리인 [redacted]
피 고	1. [redacted]시
	소송대리인 F, G
	2. [redacted]공단
변 론 종 결	2020. 1. 10.
판 결 선 고	2020. 2. 14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피고들은 원고들에게 [redacted]시 [redacted]구 H 대 542.6㎡ 중 11/22 지분에 관한 [redacted]법원 [redacted]지원 2008. 4. 22. 접수 제450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H 대 542.6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공유 지분권자인 원고들(원고 E 14/22, 원고 A, B, C, D 각 2/22)은 2008. 4. 22. 의료법인 I(이하 '이 사건 의료재단'이라 한다)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1/22 지분(원고 E 3/11, 원고 A, B, C, D 각 2/22)에 관하여 2008. 4. 15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나.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의료재단 지분에 관하여 피고 [redacted]시는 2010. 9. 14.자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등기를, 피고 [redacted]공단은 2012. 1. 4.자 보험료채권에 기초한 압류등기를 각각 마쳤다.

다.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 해당 지분을 부담부증여 받고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2013. 2. 22.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([redacted]법원 2012가단15012, 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.

라. 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의료재단이 항소하였고, 원고들은 2013. 8. 14.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의료재단 지분에 관하여 '증여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청구권'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결정([redacted]법원 [redacted]카단[redacted], 이하 '이 사건 가처분 결정'이라 한다)을 받아 그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항소심 법원이 2014. 1. 7. 이 사건 의료재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

1)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원고와 이 사건 의료재단 사이의 증여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의료재단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,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인 이 사건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승낙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,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, 해제된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압류 집행한 채권자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고, 따라서 원고로서는 증여계약의 해제로서 피고들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4-02

나. 원고의 추가 주장에 판단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피고 [redacted]공단의 압류등기는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진 후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의료재단에 관한 회생절차([redacted]법원 2011회합124)에서 2011. 9. 22.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그 취지의 등기가 2011. 10. 14.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, 한편 위 증거에 따르면 2012. 1. 3. 이 사건 의료재단에 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압류등기는 그 후 마쳐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[redacted]